2002. 5. 20(月) 제80회임시회제2차본회의

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總務社會委員會

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5. 10 제 천 시 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5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5. 16(제80회임시회총무사회위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조동현)

가. 제안이유

○ 하소동의 "청구아파트" 신축에 따라 통·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4조(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)의 별표 용두동의 29통 다음에 30통 9개반과 31통 8개반 도합 2개통 17개반을 신설 (498세대 증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○ 법규적검토

•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제6항에서는 "행정 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 부조 직을 둘 수 있다"라는 통·반의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금 번 개정 안의 2개통 17개반 신설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

- 조례 제3조(획정기준)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반의 호수 규모(50 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)나 통·리에서의 반 설치규모(11개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)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수준임.
- 아울러 동 조례는 2001. 6. 29 ~ 7.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 바, 이견 제출은 없었고 2001. 9. 6일 제천시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사안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음.

○ 행정적 검토

• 동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2001. 9. 6일 제천시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후 의회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청구주택의 부도로 분양이 미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기관내에 계류되었다가 금번 분양이 개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늘어날 통·반설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"없 음"

5. 토론요지

"없 음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7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